

※ 본 질의응답은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운영의 근간인 보건복지부 고시 「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을 바탕으로 그간의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을 현재 기준으로 재구성한 내용으로서 향후 제도 변경 시 변동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.

## 다빈도 질의응답

Q1

**만성신부전증의 외래 투석 당일 타상병으로 다른 요양기관에서 진료 시 특례 적용 여부는?**

- 산정특례 적용시 투석 당일 진료비만 해당되며, 외래 투석 당일 이루어진 타상병도 특례 적용 (투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사항 없음)  
\* 타상병 특례적용이란, 등록 질환과 관련 없는 타 상병 질환까지 적용됨을 의미함

Q2

**만성신부전증환자의 투석관련 입원 진료분의 범주는?**

-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 등을 실시한 입원진료분에 대하여 산정특례 대상임
  - 또한,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학적인 응급증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원하여 일시적으로 「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」, 「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」, 「체외복수투석」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투석의 범주에 해당됨
  - 다만, 급성신부전증환자가 응급으로 입원하여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 등을 일시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산정특례대상에서 제외됨

Q3

**만성신부전증환자가 혈액투석을 위한 카테터삽입술만 시행하고 투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**

- 투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입원 진료분은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않음

Q4

####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“해당시술 관련 입원진료”

- 외래진료시 정하고 있는 인공신장투석, 계속적복막관류술, 관련약제 투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상병 관련 입원 진료분만 적용됨  
**(예시)**
  - 만성신부전증환자가 투석을 목적으로 입원한 진료분 또는 타상병 진료 목적으로 입원 중인 경우에는 투석관련 진료분에 한하여 특례적용(분리청구)

Q5

#### 만성신부전증환자가 가정에서 자가복막투석을 한 당일날 응급실 또는 낮병동으로 입원하여 진료한 경우(응급실 또는 낮병동 등에서 투석이 이루어지지 않음)

- 가정내 자가복막투석의 경우 입원진료시에도 외래와 동일하게 복막투석액 등 약제 수령을 기준으로 특례적용하고 있으므로 원내에서 투석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않음
  - 아울러, 이미 수령해간 약제를 병원으로 가져와 요양기관에서 의료진에 의하여 계속적 복막관류술이 시행되는 경우는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됨

Q6

#### 만성신부전증환자가 혈액투석을 위해 A병원에서 카테터삽입술만 시행하고 퇴원한 후, 당일 타병원으로 전원하여 투석을 실시한 경우 같은 날(투석실시일) A병원의 진료도 산정특례 대상인지?

- A병원의 진료가 투석행위 없는 입원인 경우는 산정특례 적용 제외되며, A병원의 진료가 외래인 경우는 산정특례 적용함

Q7

#### 희귀질환, 종종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(종료일 3개월 이내) 경과 후, 같은 상병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할 경우 어떤 검사 기준으로 등록해야 하는지?

- 산정특례 적용 종료일이 경과한 이후, 동일상병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 기준을 적용

Q8

**의귀난치성질환 신규등록 시 상병코드와 재등록 시 상병코드가  
변경되는 경우 재등록 기준은 어떤 것을 적용하는지?**

- 재등록은 신규등록 시의 세부상병(상병명과 상병코드)과 동일한 경우에 할 수 있음(동일 상병코드인 경우 일련번호까지 일치해야 함)
  - 신규등록 시 세부상병(상병명과 상병코드)과 재등록 시 세부상병이 불일치하는 경우 신규등록기준이 적용됨
- (예) 신규등록 시 골덴하 증후군(Q87.0)으로 등록한 후, 재등록 시에도 골덴하 증후군(Q87.0)으로 확진받아 재등록 하는 경우 ⇒ 골덴하증후군(Q87.0)의 재등록 기준을 적용
- (예) 신규등록 시 골덴하 증후군(Q87.0)으로 등록한 후, 로빈 증후군(Q87.0)으로 확진받아 등록하는 경우 ⇒ 로빈증후군(Q87.0)의 신규등록 기준을 적용

Q9

**뇌혈관 및 심장질환자가 고시에서 정한 수술을 받고 퇴원 후  
합병증 등으로 재입원시**

- 재입원시에도 고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산정특례 대상이나, 그 외에는 산정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적용

Q10

**'급성기 중증뇌출혈환자' 의 산정특례 적용 방법**

- I60~I62를 '주상병'으로 입원한 환자 중에 영상검사 등을 고려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'급성기'로 진단된 경우 적용  
  
예시) Q: 뇌출혈환자가 재활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 
A: '급성기'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례대상이 아님
- 급성기 중증뇌출혈로 산정특례 적용받던 중에 고시에서 정한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산정특례 각각 적용 가능  
(V268과 V191 모두 적용 가능)

Q11

**'증상 발생 24시간 이내' 의 적용 기준**

- 증상 발생(또는 발견) 후 병원에 도착한 시간 기준
  - 타 병원에 경유하여 내원한 경우 증상 발생(또는 발견)으로부터 내원한 첫 번째 병원에 도착한 시간

Q12

**뇌혈관 및 심장질환자가 고시에서 정한 수술을 하고 합병증 등으로 치료가 불가하여 타 요양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적용여부**

- 수술을 시행한 요양기관에서 치료가 불가하여 타 요양기관으로 이송한 경우에도 산정특례 대상이며, 적용기간은 연계하여, 이송된 요양기관에서는 최대 30일 중 당초 수술 시행기관에서 적용한 일수를 제외하여 잔여 기간만 적용함. 단, 급성기치료가 끝난 후 환자의 원에 의하여 이송한 경우는 산정특례 적용 불가